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3
----------	------

제출일자 : 2019. 6. 12.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의 법률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규정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폐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14. ~ 6. 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28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4.7.10., 조례 제2286호)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u> <u>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u> <u>으로 한다.</u>	부칙(2014.7.10., 조례 제2286호) 제2조 -----. <삭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19. 7. 16.>

※ 참고(개정 전)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